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92 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정청래·이병진·이광희

조계원 · 김현정 · 전현희

이건태 · 김영호 · 서영교

김승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(24. 11. 14)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「도로교통법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.

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 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(안 제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아니한 경우"를 "아니하거나" 로, "제외한다)와"를 "제외한다),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처벌의 특례) ① (생 략)	제3조(처벌의 특례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	②
중 업무상과실치상죄(業務上過	
失致傷罪) 또는 중과실치상죄	
(重過失致傷罪)와 「도로교통	
법」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	
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	
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(公	
訴)를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	
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	
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	
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	
구호(救護)하는 등 「도로교통	
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	
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	
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	
겨 유기(遺棄)하고 도주한 경	
우, 같은 죄를 범하고 「도로교	
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	
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<u>아</u>	<u>o}</u>
<u>니한 경우</u> (운전자가 채혈 측정	<u>니하거나</u>
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	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12. (생 략)

제외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어 제외한다), 「도로교통법」 제4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 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-----

1. ~ 12. (현행과 같음)